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2 - 560호

의안명 「국민 생활 속 불공정·차별요인 개선」(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대상기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결정일 2022. 7. 25.

주문

국민 생활 속 불공정·차별요인 개선(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에게 권고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7월 25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옥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장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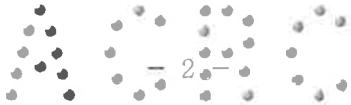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국민 생활 속 불공정·차별요인 개선

- 채용 및 자격인정 과정 등의 공정성 제고 -

2022. 7.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먹는샘물 등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명확화	2
2.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의 합리화	5
3.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기준 관련 불공정 요인 개선	10
III. 조치 사항	14

<붙임>

1. 먹는샘물 등 제조업체 현황	15
2. 취업대상 지원자의 가점 대상 및 기준	17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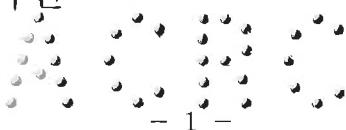
- 국민들은 '생활 속 불공정·특권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제도에 대해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일반 국민 설문결과(1,000명, 전화) 78.3%가 '생활 속 불공정·특권'이 심각하다고 응답, '매우 심각하다' 응답은 30대 이하에서 42.3% 차지 ('19.6월, 국민권익위)

-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불공정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 사회전 분야에서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최근 남녀 갈등, 세대 간 충돌 등 다양한 양상의 사회 갈등이 일시에 표출되면서 '불공정·특혜·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개혁 요구 증가
- ※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3위로 최상위권(전경련, '21.9월)

- 이에, 채용·자격·경력인정 등을 규정한 법령 등에서 기회의 동등, 경쟁과 형평을 저해하는 불공정 요인에 대한 개선 추진
- 먹는샘물 등 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일부를 국가·지자체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민간업체 경력자의 진입을 제한
-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채용시험 대상의 불분명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 혜택을 제한
- 퇴직공무원이 청원경찰로 채용되면, 보수산정 시 담당했던 직무와 상관없이 공무원 시절의 상근기간 모두를 청원경찰 근무경력으로 인정 등

- 그동안 해당 분야 제도에 내재한 채용, 자격기준, 경력인정 등과 관련된 불공정·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 혜택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먹는샘물 등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명확화

(환경부, 해양수산부)

□ 현 황

- 먹는샘물·수처리제·해양심층수·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품질관리인은 제품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벌칙 부과

※ (먹는물) 수돗물, 먹는 샘물, 해양심층수 등, (수처리제) 물을 정수·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재, (정수기) 물리·화학·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취수 꼽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

※ 제조업체 : 먹는샘물 60개, 해양심층수 6개 업체 (붙임1 참조)

- 품질관리인*은 제품의 품질과 제조 시설의 위생 관리를 담당하며,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조업자에게도 일정한 의무 부과

* 먹는샘물 등의 제조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품질관리인이 제품의 품질관리와 연계된 원수 및 제품의 주기적인 수질검사·관리, 제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 기준 관리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

※ (제조업자 의무)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보장, 품질관리인의 정당한 업무수행 방해 금지, 품질관리인의 업무상 요청사항 반영

□ 문제점

-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1~3년 이상 환경·식품위생 행정 분야의 업무 종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먹는샘물 등 제조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①수질환경산업기사·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①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 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 자격증 소지자
②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 졸업자	②대학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등 학과·학부 졸업자
③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③해양환경행정,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 해양수산부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먹는물관리법」(환경부)의 수질검사, 품질관리 등의 절차·기준을 준용하여 제정('07.8.3.)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환경 행정* 등과 같이 공무원만을 위한 자격기준을 설정·운영
 - * 환경행정: 기후, 대기, 물, 자연생태, 폐기물, 재활용 등 업무 분야가 광범위
- ※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달리, 먹는샘물 등 제조업 자격 기준의 경우 관련 행정 분야 업무 종사자로 설정되어, 민간에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람은 배제
- 품질관리인을 채용하는 제조업체는 관련 행정 분야에 대해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민간업체 업무 경력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관련 민원도 다수 제기
 - * 최근 환경부 입장 :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란 환경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가진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이 해당되며, 민간분야 경력자까지 포함되지 않음. (민원답변, 2020.1.10.)

《 관련 민원 사례 》

- (민원)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호다목의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에 **환경업체에서 환경행정 업무를 종사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 (환경부 답변) 환경 관련 기관 외에 기업, 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환경 또는 식품위생 분야의 사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 경력 포함이 가능함. (국민신문고, 2016.11.)
- (민원)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호다목의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 수처리제 제조업체 등 사기업에 종사한 업무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 → (환경부 답변) 국가, 지자체 또는 그 부속기관 종사자를 의미하며, 동종 업체나 관련 사기업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음. (국민신문고, 2017.12.)
- 「먹는물관리법」에서 품질관리인의 직종, 경력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환경행정, 식품위생행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관련 업체 종사자를 제외하고 있으니, 관련 제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품질관리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 2018.12.)
- (민원)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호다목에 ‘1년 이상의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해석을 도청, 시청, 환경부 등에 문의해도 답변을 제대로 못함. 제2호다목처럼 ‘수질 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문구처럼 제1호다목의 개정 필요. (국민신문고, 2019.12.)

□ 개선방안

- 먹는샘물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거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 분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정수기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시행령 제6조제2호다목) 또는 공공·민간의 수질 검사·연구 기관(업체)에서 ○년 이상 원수 및 제품의 수질 검사, 위생·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품질관리인의 처벌·제재 강화

- 관련 행정 분야의 업무 종사자(공무원) 이외 민간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품질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호다목 개정 (환경부)

-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거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 분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공공·민간의 수질 검사·연구 기관(업체)에서 ○년 이상 원수 및 제품의 수질검사, 위생·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품질관리인의 처벌·제재 강화

- 관련 행정 분야의 업무 종사자(공무원) 이외 민간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품질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개정 (해양수산부)

2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의 합리화

(국가보훈처)

□ 현황

- 국가보훈처의 보훈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채용되어 취업 중인 인원이 약 12만 명에 이른다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부여 및 보훈 특별고용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합 계	115,680	116,705	118,190	119,696	119,701	
본 인	12,637	13,232	13,748	14,466	14,700	
유가족	103,043	103,473	104,442	105,230	105,001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부여 등 특혜 제공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②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③ 사립학교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10%*를 가점

* 필기·실기 등 각 시험마다, 2개 이상의 과목인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점하고, 취업지원 대상자 간에도 그 공헌도 등에 따라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점하도록 하여 가점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음 (붙임2 참조)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운영

- 보훈관서는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진행 및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고용을 명할 수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업체 등에 명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문제점

○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채용시험의 대상 불분명

* 소수인원을 채용하면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경우 일반 국민의 취업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 예정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시험에도 적용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업무 혼선 초래

※ 최근 5년간 국민신고를 통해 접수된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관련 민원이 668건에 달하고, 그중 가산점 부여 및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 대상 등과 관련 민원이 222건을 차지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시험에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혜택을 제한

-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로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취업 지원 대상자(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사람)가 가점부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취업지원 대상자 간에도 국가 공헌도, 희생 정도 등에 따라 5~10%를 가산하도록 차등을 두고 있고,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관련 민원 사례 》

- (민원) 일반전형 4명, 취업지원 대상자용 특별전형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일반전형의 모집공고문상에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공고가 유효한지? → (행안부 답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상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원채용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자체 직원채용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국민신문고, 2019.2.)
- 금번 당사에서 “보훈특별고용” 직원 채용을 검토 중으로 보훈청 추천 인원 모두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의하여 가점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판단되나, 선발인원이 1명이라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이 가능한지? “2018년 공기업체 보훈특별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서울보훈청) 참석 시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보훈특별고용의 경우에도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들의

가점을 적용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30% 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가점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신문고, 20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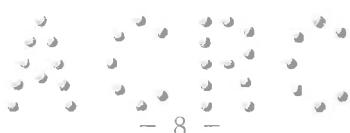
- (민원)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으로 최종합격자 3명을 선발할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훈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해야하는 것인지? → (보훈처 답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3명 이하인 경우에도 가점합격률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가점합격자 발생 시 그 자를 합격자에서 제외. 취업지원 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형에서는 가점합격률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5~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해야 함. (국민신문고, 2020.6.)
- 제한경쟁으로 1명을 모집하는 경우까지 30% 초과를 적용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받는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고, 우선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결국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 혜택을 받으려면 4명 이상의 모집공고에만 응시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또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역차별하는 제도이니 현실과 동떨어진 실효성 없는 제도를 시정해 달라. (국민신문고, 2020.6.)
- (민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을 보면 선발인원이 1명인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발인원이 1명인 경우 가점 합격자가 없는데 굳이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주고 순위를 변동해야하는 이유? → (보훈처 답변) 선발인원 3명 이하는 가점 합격자가 발생할 수 없으나, 법 절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되 원점수로 합격한 자에 대해 가산된 점수로 합격점수와 합격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점자 발생 시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국민신문고, 2020.6.)
- 법으로 정해진 가점을 부여한 이후 가점 합격자의 30%를 제한해야 하나, 상당수의 기관에서 4명 미만의 인원 채용 시 모집공고문 상에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제출'이라는 문구조차 넣지 않고 있어, 응시자 수가 선발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동점자가 생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국민신문고, 2020.6.)
-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상에 '선발인원 3인 이하인 시험인 경우 가점 합격자는 발생할 수 없다'는 규정과 실시기관의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 취업 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명을 채용한 것이 최근 감사원의 공공부문 채용점검 결과에서 가점부여 진행한 채용을 감사 처분한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정비가 필요. (국민신문고, 2020.8.)
- 취업지원 대상자가 59점의 면접점수를 받았는데, 취업지원 대상자만이 지원 가능한 제한경쟁 채용으로 일반 응시자와 경쟁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만점의 5점 또는 10점의 보훈가점을 부여받지 못하여 불합격자로 결정된 것이 타당한 일인지? (국민신문고, 2021.10.)

□ 개선방안

- 보훈특별전형 등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채용하는 시험에는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30% 초과 제한)가 적용되지 않음을 법령 또는 업무처리 지침 상에 명확히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⑤ (생략)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채용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현행	개선 (예시)
<p>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① ~ ③ (생략)</p> <p>④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u>아니한다.</u></p>	<p>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u>아니한다.</u>(다만,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채용시험은 제외)</p>



□ 현 황

- 청원경찰은 공공기관·사업장의 재산이나 시설 치안 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배치하는 경찰

※ 청원경찰은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보호조치·범죄예방과 제지·무기사용 등을 할 수 있으며, 전국 중요시설에 1만 3,700여 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

< 청원경찰 배치현황 >

(단위: 명)

구 분	합 계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지자체 외	비 고
2017	12,592	2,164	6,934	3,494	
2018	12,885	2,291	6,899	3,695	
2019	13,634	3,068	6,793	3,773	
2020	13,704	3,459	6,624	3,621	

※ 주요 업무: 사업장의 직원과 재산을 화재, 도난, 파손 및 불법침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계업무, 폭력·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작업현장 정기 순찰업무, 장비·기구·화재위험성 물질·방호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 신규 채용한 청원경찰의 보수산정 시 경력인정은 배치시설의 취업 규칙을 적용하고,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

- * 군·의무경찰·청원경찰로 근무·복무한 경력, 수위·경비원·감시원, 국가기관·지자체 상근 근무 경력 등

< 봉급 산정기준 경력 >

-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 문제점

-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경비·수위 등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근무한 사람이 국가·지자체의 청원경찰로 신규 채용된 경우 보수산정 시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 *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 국가철도공단 등 공사·공단
 - 퇴직공무원이 청원경찰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유사 직무와 상관 없이 공무원 시절의 상근 경력 모두를 인정*받고 있음
 - * (예시) 국가기관의 청원경찰로 신규 채용된 “갑”(지자체-미화원 5년 근무)과 “을”(국립대학교-경비원 5년 근무), 해당 국가기관에 별도의 경력 산정에 대한 취업규칙이 없거나, “청원경찰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갑”的 미화원 5년 근무 경력은 청원경찰 보수산정 시 모두 인정받고 “을”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함
- ※ ‘청원경찰법령’과 유사·동일한 법령체계를 갖춘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법령’에서는 경력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경비 등 보조·지원 근거 》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산림직원법 시행규칙」
<p>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 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u>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u>	<p>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2. 군에 복무한 경력3. <u>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u>4. 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u>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u>

※ 신규 채용된 청원경찰의 경력인정 시 공공기관(공사·학교 등)에서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 또는 불인정하는 서로 다른 유권해석 및 퇴직공무원은 근무 경력과 상관없이 모든 경력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 빈번

《 청원경찰 경력 산정 관련 민원 사례 》

- (민원) 지자체 행정공무원(16호봉)으로 청원경찰로 이직할 경우 지자체 근무 경력 모두를 청원경찰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경찰청 답변) 청원경찰 보수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9.5.)
- 국가철도공단에서 중요시설의 방호업무를 하다 '21.8. 지방해양수산청의 청원경찰로 임용, 공공기관의 방호업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사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으나, 국가나 지자체의 퇴직자는 방호업무 경력과 상관없이 모든 근무 경력을 인정받고, 공공기관에서 방호업무를 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 (국민신문고, 2022.1.)
- 청원경찰의 경력과 보수를 불합리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경력 산입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제4호 규정은 유사경력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동일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 노동환경 혼란야기, 평등권·노동인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허술하고 미비한 법령을 개정해 달라. (국민신문고, 2022.2.)
- (민원) 국가철도공단에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업무를 하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으나, 청원경찰의 직무와 유사·동일한 국가철도공단의 방호 경력을 호봉산입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찰청 답변) 국가철도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원경찰 보수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민신문고, 2022.3.)

□ 개선방안

- 공공성이 있는 민간분야 유사 경력자도 청원경찰 보수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국가·지자체와 민간분야(국·공립학교, 공사·공단 등) 청원경찰 간 차별 없는 경력 산입기준이 마련·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 ※ 장기적으로 국가·지자체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 경력만 보수산정 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개선 추진

⇒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등.



※ 공공성이 강한 민간분야(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경비·방호원 등 청원경찰과 비슷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청원경찰을 운용하는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모두 제정·운영 중)에 유사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유사 경력을 인정한 취업규칙 적용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조례」	「한국수력원자력 총무규정」
<p>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생략)</p> <p>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p>	<p>제13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생략)</p> <p>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p>	<p>제129조(초임호봉, 정기승호 등) (생략)</p> <p>1. 군복무기간 경력 : 환산율 100% 2. 한국전력공사 및 당사의 전직경력(직원, 청원경찰 및 상근별정직) : 환산율 100% 3. 기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근무경력 : 환산율 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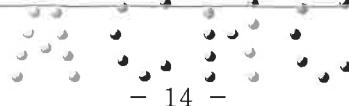


III.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① 먹는샘물 등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명확화	<p>① 먹는샘물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거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분야로 구체적으로 규정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호다목 개정</p>	2023.02.28. (환경부)
	<p>②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거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분야로 구체적으로 규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개정</p>	2023.02.28. (해양수산부)
②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특별전형 등 보훈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시험에는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30% 초과 제한)가 적용되지 않음을 법령 또는 업무 처리지침 상에 명확히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 개정	2023.08.31. (국가보훈처)
③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기준 관련 불공정 요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이 있는 민간분야 유사 경력자도 청원경찰 보수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장기적으로 국가·지자체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 경력만 보수산정 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개선 추진 ⇒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개정	2023.02.28. (경찰청)



불임1

먹는샘물 등 제조업체 현황

◆ 먹는샘물 제조업체 (환경부)

연번	시도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허가일자
		60개 업체								
1	울산	(주) 삼정샘물	전계윤	울주군 두서면 옥동길 116						1997.05.01
2	울산	(주) 알프스샘물	문병환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74						2004.05.27
3	세종	하이트진로음료(주)세종공장	조운호	세종시 전의면 상대부길 33						1996.06.04
4	경기	우리샘물(주)	박찬원	가평군 조종면 연인산로 474번길 140-57						1996.06.25
5	경기	(주) 제이원	강재구	가평군 조종면 명지산로 514-149						1996.07.08
6	경기	(주)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김재옥	연천군 청산면 순죽길 256						1996.04.02
7	경기	(주) 포천샘물	장진례	포천시 일동면 금강로 4692						2018.06.25
8	경기	(주) 씨엠	정만호	가평군 설악면 회곡안골길 146						2021.02.05
9	경기	풀무원샘물(주)	조현근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1870번길 142-24						1996.06.03
10	경기	씨에이치음료(주)양주공장	장학영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 197-53						1996.04.10
11	경기	(주) 백학음료	장학영	연천군 백학면 장백로 589						2009.07.22
12	경기	(주) 포천그린	전금영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1870번길 173						1997.08.14
13	경기	(주) 연천에프앤비	박상복	연천군 신서면 합내로 1247						2020.12.29
14	경기	산수음료(주)	김지훈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900번길 40-15						1995.11.22
15	경기	한국청정음료(주)	류장	포천시 이동면 늄바위길 207-16						1995.05.01
16	경기	포천음료(주)	김우정	포천시 화현면 우시동길 16						2020.04.27
17	경기	(주) 이동장수샘물	양혜경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085-23						2004.04.10
18	경기	(주) 포천에스엠	전태희	포천시 영북면 방골길 924						2011.06.13.
19	경기	(주) 션샤인	김순이	파주시 월롱면 검바위길 166-62						2011.06.20.
20	경기	(주) 그린라이프	김광탁	양평군 양평읍 회현길 50번길 18						1995.06.07.
21	강원	강원샘물(주)	이호섭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782						1996.06.14
22	강원	해태에이치티비(주)철원공장	전재호	철원군 근남면 하문수동길 93						1999.06.05
23	강원	(주) 동해샘물	송현규	동해시 석두골길 151						2004.02.27
24	강원	(주) 서윤	박영희	횡성군 청일면 속실길 399						1996.05.23
25	강원	주식회사 설악산수	박란희	인제군 북면 고원통로 333						2005.05.31
26	강원	(주) 태백산수음료	박기환	홍천군 화촌면 굴운로 471						1996.11.13
27	강원	해태에이치티비(주)평창공장	전재호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227-35						1996.05.29
28	강원	(주) 코리워터스	이필란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875						2015.01.14
29	충북	(주) 금천게르마늄	양재생	옥천군 청성면 청성로 76						1997.07.25
30	충북	(주)동원F&B중부공장	김재옥	괴산군 불정면 하산로 1길 33-10						1996.06.04
31	충북	하이트진로음료(주)	조운호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거내암로 308						1995.06.26
32	충북	씨에이치음료(주)	장학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성대2길 59						1996.10.19
33	충남	(주) 금산인삼골	전병철	금산군 추부면 개덕사길 70						1996.07.18.

연번	시도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허가일자
34	충남	(주) 대정	성승국	천안시 성남면 대정1길 19-11	1996.05.20.
35	충남	하이트진로음료(주)천안공장	조운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1길 223	1996.06.14.
36	충남	(주) 백봉음료	노현준	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258-14	1997.11.29.
37	충남	(주) 대산에스엠	전계윤	공주 정안면 가락골길 131-69	1996.12.19.
38	전북	맑은물(주)	유진희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126-26	1999.04.23
39	전북	(주) 로터스	박시우	순창군 쌍치면 둔전1길 35	1997.03.27
40	전북	(주) 동원에프앤비	김재옥	완주군 소양면 복은길 46-39	2018.04.06
41	전남	미소음료(주)	김경민	담양군 용면 추월산로 735	1996.01.15
42	전남	(주) 회천	박태호	구례군 산동면 효동길 30-10	1999.06.05
43	전남	신도음료(주)	강대석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294-3	2002.10.14
44	전남	(주) 토큼림	박수경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산7	2001.04.10
45	경북	(주) 동천수	박철호	상주시 화북면 문정로 1623-32	1996.01.29
46	경북	(주) 상원	김동신	영양군 일월면 오리도곡로 435	2007.02.15
47	경북	(주) 로진	구용회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2141-16	2009.03.18
48	경북	(주) 청도샘물	박배창	청도군 각북면 덕촌1길 38-7	2015.04.15
49	경남	(주) 하이엠샘물	장구현	고성군 구만면 구만로 1010	1996.01.11
50	경남	(주) 지리산산청샘물	최낙준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460-22	1996.04.02
51	경남	(주) 호진지리산보천	김범수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254-19	1996.04.30
52	경남	(주) 순정샘물	윤순정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462번길 67-21	1996.05.23
53	경남	산청음료(주)	김이훈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59-61	1996.05.23
54	경남	(주) 지리산청학동샘물	이구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219-85	1999.05.17
55	경남	샘소슬(주)	정의업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1길 15-94	2000.05.16
56	경남	(주) 엘케이샘물	김로라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462-30	2000.06.16
57	경남	(주) 동천수 가야산샘물	박철호	합천군 묘산면 영서로 1724-12	2002.12.13
58	경남	(주) 화인바이오	윤상억	산청군 시천면 삼신봉로 460	2016.04.28
5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정학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1998.01.23
60	제주	한국공항(주)	유종석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871-79	1984.08.30

◆ 해양심층수 제조업체 (해수부)

연번	시도	업체명	허가기관	취수 해역명	허가일자
6개 업체					
1	강원	(주) 워터비스	강원도	양양원포	2008.04
2	강원	(주) 강원심층수		고성오호	2009.04
3	강원	(주) 글로벌심층수		속초외옹치	2010.06
4	강원	(주) 솔트로드		동해추암	2021.04
5	경북	(주) 파나블루	경상북도	울릉현포	2009.06
6	경북	(주) 울릉심층수		울릉태하	2009.05

붙임2**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 대상 및 기준**

- 기업체 직원,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등 채용시험 시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지원

《 채용시험 가점 대상 및 기준 》

대상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가) 애국지사 본인 나) 순국선열의 유족 다)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라) 애국지사의 가족 마)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사) 국가유공자 본인 아) 전몰군경 · 순직군경 · 4·19혁명사망자 · 순직공무원 ·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본인 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유족	카) 국가유공자의 가족 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파)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하)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너)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 중 1인
5·18민주유공자	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벼)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어)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저)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	처)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커)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터)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퍼)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하) 특수임무사망자 ·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대상별	10% 가점	5% 가점
고엽제 후유의증	고)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노)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도)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로)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모)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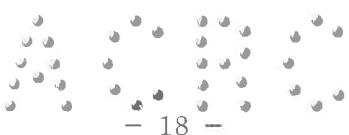
※ 자료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는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10%의 가점 대상을 일부 5%로 변경

《 채용시험 10% 가점대상자 변경 》

구분	채용시험 10% 가점대상자	
	2012.6.30. 이전 등록	2012.7.1. 이후 등록
독립유공자	보) 애국지사 본인 소) 순국선열의 유족 오)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조) 국가유공자 본인 초)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본인 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 등(지원 대상자)의 유족	포) 국가유공자 본인 호)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5·18민주유공자	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누)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두)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루)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무)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부)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수)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우)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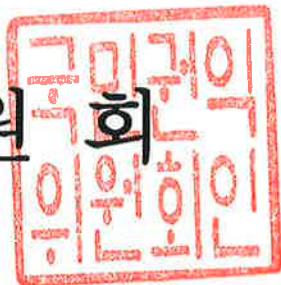
※ 자료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정 본 입 니 다.

2022. 7. 26.

국 민 권 익 위 원



ACRC